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지도자 및 선수육성과 클럽선수, 체육동호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연맹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등록과 활동 등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등록”이라 함은 본 연맹의 당해 선수로 선수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도자등록”이라 함은 본 연맹의 당해 종목지도자로 지도자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체육동호인”이라 함은 본 연맹의 당해 동호인으로 동호인활동을 희망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등록선수”라 함은 본 연맹의 종목에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5. “등록지도자”라 함은 본 연맹의 종목에 지도자활동을 목적으로 지도자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6. “등록체육동호인”라 함은 본 연맹의 종목에 동호인활동을 목적으로 동호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7. “신인선수”라 함은 선수활동을 목적으로 본 연맹에 처음 선수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8. “선수활동”이라 함은 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본 연맹의 등록선수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9. “지도자활동”이라 함은 지도자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본 연맹의 등록지도자로서 각종대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체육동호인활동”이라 함은 동호인등록을 필한 자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본 연맹의 등록 동호인으로서 각종대회 및 강습참가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체육특기자”라 함은 본 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을 마친 등록선수 가운데 당해 학교에 특례 입학한 학생선수 및 재학 중에 교육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단, 초등학생은 선수등록 후 선수활동중인 자이며, 체육특기자 이외의 학생선수로서 본 연맹에 선수 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할 경우에도 체육특기자로 적용받는다.)
12. “유급학생선수”라 함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중 당해 학교급의 동일한 학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13. “재수학생”이라 함은 각급학교를 졸업한 후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14. “등록변경”이라 함은 본 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수등록 된 자가 소속단체 및 등록지 등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5. “이적 동의서”라 함은 정해진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마친 후 소속 단체를 변경할 경우에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를 표시하는 양식을 말한다.
16. “클럽선수”라 함은 학교 또는 실업팀 등의 운동 경기부 이외의 본 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체육시설, 체육관 포함)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17. “동호인선수”라 함은 일반인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는 청소년이 본 연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선수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18. “체육동호인”은 성인이 본 연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동호인부에 동호인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19. “청소년체육동호인”은 청소년이 본 연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동호인부에 동호인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20. “지도자·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지도자·선수등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연맹이 운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 3 조(가맹단체의 제정의무)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을 준용하여 본 연맹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과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정하고 대한체육회에 보고 한다.

제 4 조(적용범위) ①본 연맹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과 지도자·선수 등록·체육동호인 및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활동에 관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대한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참가와 본 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참가에 관한 사항은 각각의 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③ 외국 국적자의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에 대하여는 본 연맹, 국제육상경기연맹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연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제2장 지도자, 선수 및 체육동호인 등록

제 5 조(선수등록) ①선수등록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 연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대학교 포함)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하며, 등록은 1회 등록으로 영구히 유효하다.

② 학생이외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일반부(실업팀) 및 제 8조에 준하여 각각 선수등록을 한다.

③ 등록선수는, 본 연맹에 대하여 다음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 본 연맹이 주최·주관 또는 승인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 본 연맹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의결된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6 조(지도자등록) ① 지도자등록을 희망하는 지도자는 본 연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또는 승인된 스포츠클럽, 일반부(실업팀)소속으로 지도자 등록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도자는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지도자 등록을 할 수 없다)
9.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도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③ 등록절차를 마친 지도자가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제 7 조(체육동호인등록) ① 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본 연맹에서
등록 된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청소년체육동호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본 연맹에서 등록 된 체육동호인
조직, 스포츠클럽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 8 조(선수등록의 예외) ① 고등학교 재학 중 선수등록을 하고 선수활동을
하던 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실업팀으로 우선 취업한 후 취업
당해연도 또는 그 이후에 대학교(주야간 포함)에 진학한 자는 본 연맹의 결정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부(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자는 대학소속으로 등록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 제2항 7호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일반부(실업팀)로 선수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직장
운동부 소속에 한한다.

1. 기업체
2.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법인체
4. 시·도체육회 (근로소득지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 카드 등
근로계약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제 9 조(선수등록 구분) ① 본 연맹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각 부별 등록연령(단, 연령기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다)제한은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연맹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부를 둘 수 있다.

1. 초등학교부 (13세이하)
2. 중학교부 (16세이하)
3. 고등학교부 (19세이하)
4. 대학교부
5. 일반부
6. 동호인부

② 교도소(소년원 포함)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는 소관부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다.

③ 유급선수 및 연령초과 해당자의 연령은 제1항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0 조(연령 초과 선수의 등록) 제9조의 연령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령의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여 연령이 초과된 선수는 시도경기단체에 등록 신청서 제출 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1 조(등록시기) ① 등록기간(선수 및 팀 등록)은 매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수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설팀 및 신인선수, 이적선수, 체육동호인에 한해서는 연중 수시로 등록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31일 이전에 한하여,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다.

② 추가등록은 본 연맹에서 정한 기한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가등록과 신인선수 및 신설팀의 등록시기와 회수는 당해 본 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선수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선수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된 선수까지 유효하다.

④ 지도자등록은 등록 마감일까지 지도자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된 지도자까지 유효하다.

제 12 조(선수등록 자격) ① 학생선수의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전학 및 학교급을 달리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2. 교육기본법 등 관계법규에 정해진 학교에 입학, 재입학, 복학, 전학 및 편·입학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학교(전문대학 및 야간 대학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교육부장관이 관보에 공고한 학교 포함)에 재학중인 자로서 당해 학기에 학생 등록을 필한 자(학생등록의 학기는 학사 편입자를 포함하여 총 12학기까지 인정한다.)
3.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여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대학원 재학생 포함)
4. 기타 본 연맹이 승인한 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자

② 학생선수 이외의 일반 실업팀·동호인선수·클럽선수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계약에 의해 소속을 정한 자
2. 동호인선수 또는 클럽선수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하여 3개월 이상 소속을 정한 자

③ 선수등록을 희망하는 자에게 본 연맹에서는 당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정의 선수등록비 및 대회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3 조(지원서의 관리) ①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졸업자 포함)로서 취업하여 선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지원(보호자 확인날인)과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졸업예정자와 소속 학교장은 매년 3월1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지원 및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서를 접수 받은 실업팀에서 취업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실업팀의 확인을 받아 타 실업팀에 재추천할 수 있으나 졸업 예정자가 취업하기로 결정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취업에 이용되는 지원서는 본 연맹에서 대한체육회로부터 지급받 관리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선수에게 1인 1매로 한정하여 본인의 서명 날인 후 지급한다.

③ 취업을 위하여 소속단체장에게 추천을 신청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④ 취업 추천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소속단체장은 추천서 작성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추천서 사본을 본 연맹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연맹에서는 이를 해당 팀과 기타 관련 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4 조(선수등록 자격의 제한) 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졸업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 따른 등록은 당해 학교급의 최종학년도 졸업(자퇴) 이후로 한정한다.

② 동일재단 또는 동일구내 학교라 할지라도 혼성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재학 중 휴학 중인 자와 해외유학생은 해당기간동안 당해 학교급 또는 일반부선수로 등록 할 수 없다.

④ 군에 복무중인 자는 대학 또는 실업팀 소속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단, 사회복무요원은 배정된 소속단체로 등록할 수 있으나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청 소속선수는 예외로 한다.

⑤ 대학원 재학생 및 학생신분(제8조 1항 제외)이 아닌 실업팀 선수는 일반부로 등록한다.

⑥ 외국에 등록된 선수이거나 외국 국적자는 출입국 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연맹의 별도의 등록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⑦ 동일인이 제9조에서 정한 각 부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인이 2개 이상의 가맹단체에 중복하여 선수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가맹단체가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중등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시·도를 달리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종목에 등록할 수 없다.

⑧ 이 규정과 대한체육회의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의외의 경우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다.

제 15 조(등록절차) ① 본 연맹에서 운영하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등록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1.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에서 동호인선수는 당해 본 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소속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한다.
3. 각 시·도연맹은 각종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예비 심사 후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승인하여 본 연맹에 보고한다.
4. 각 시·도연맹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대해 1차 심사 후 승인하여, 본 연맹에 확인요청을 해야 한다.
5. 본 연맹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등록의 자격여부에 대한 심사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시·도연맹에 확인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통보한다.

②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은 등록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려는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은 대한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본 연맹은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 마감일로부터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을 확정하여 2주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등록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의 기본정보, 경기실적, 상벌사항, 국가대표 정보 등을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및 자료 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대한체육회 내규에 따른다.

제 16 조(등록지) ①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등록은 해당 지도자·선수 및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각 시·도연맹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학교팀에서 대학의 본교와 분교가 서로 행정구역(시·도별)이 상이할 경우 개인종목은 행정구역 별로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대 및 원격대학의 학교팀은 1회에 한하여 당해 학교가 지정하는 등록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지정된 등록지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7 조(등록변경) ① 등록을 마친 자의 등록사항 변경은 변경사유를 심사하여 당해 해당 위원회가 결정하여 변경 조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지 및 소속단체의 변경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정당하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진학으로 인한 신입생의 경우
2. 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생선수의 졸업 후 취업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연맹의 당해 해당 위원회가 승인한 자
3.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 소속으로의 복귀 경우
4. 소속단체의 해체 및 실업선수의 계약만료의 경우
(해체통보 공문과 계약만료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이적동의서 불필요)
5.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체육 중·고등학교(또는 체육과)가 없는 시·도의 학생이 정책 종목에 한하여 타 시·도 체육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허가 받은 경우
6. 동호인 선수는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야 하나 희망에 따라 소속단체장의 동의 없이도 소속단체를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변경까지는 전 소속단체 소속으로 한다.
7. 야간대학선수에 한하여 재학 중 실업팀 선수로 이적하거나, 실업팀선수가 재직 중 야간대학선수로 이적은 1회에 한하여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 할 수 있다. 단, 재적, 자퇴, 퇴사 일 경우에 한한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등록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선수등록의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선수구제) ① 전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본 연맹 해당 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에 심의·조정하여 당해 소속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속단체장이 부당하게 이적동의서 발급을 기피할 경우, 당해 본 연맹 해당 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즉시 소속단체장 및 구제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등록된 선수가 선수활동에 있어 동 규정 및 특별한 사유로 부당하게 선수활동 제한을 받는 경우 당해 본 연맹 해당 위원회에서 구제결정 할 수 있다.

④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중등록이 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본 연맹으로 즉시 부당등록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 활동

제 19 조(지도자활동의 자격) ① 본 연맹의 지도자등록 절차에 따라 지도자 자격을 갖춘 자만이 지도자로서 지도자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지도자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지도자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 20 조(선수활동의 자격) ① 본 연맹의 선수등록 절차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선수활동 여부는 등록절차에 따라 매년 선수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제 21 조(선수활동의 제한) ① 본 연맹에서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참가에 따른 선수활동에 관한 사항은 당해 본 연맹에서 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해당학교(단체)의 최소 재적기간을 당해 본 연맹의 실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타 학교(팀)로 이적한 경우에는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는 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변경일로부터 당해 학교 재적기간이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타 시도로 진학한 1학년(신입생)에 한하여 현재 재학중인자의 대회참가는 학교 재적

기간 15일이 경과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를 퇴학·자퇴 하고 취직하거나 직장을 퇴직하고 입학 또는 직장이전 및 군 제대 후 원 소속으로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타 단체로 이전 등록 할 수 있으나 등록일로부터 15일간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해외 유학생수가 원 소속으로 복귀할 경우에 한하여 3월말 현재 재학중인 자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선수 포기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 또는 본 연맹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선수등록을 2년 이상 하지 않은 자는 새로이 선수등록을 한 날로부터 최소 만2년이 경과한 때부터 선수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전 소속단체장의 이적 동의를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학교급 및 소속팀을 달리한 기간을 포함하여 최소 만2년 동안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단, 무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만 1년이 경과되어야 무소속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⑤ 프로 및 유사단체 선수에 대한 등록 및 대회 참가는 본 연맹 당해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⑥ 선수등록을 마친 자라 할지라도 본 연맹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에 따라 선수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⑦ 제15조 절차에 의하여 선수등록신청자가 당해 본 연맹의 최종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수활동을 할 수 없다.

제 22 조(선수활동 제한의 예외) ①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소속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여 당해연도에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서 동일종목 운동부를 설치한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관내 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전학한 자.

2. 당해연도에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당해 시·도교육청 관내에는 동일 종목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가 없거나, 당해 관내 상급학교의 체육특기자 정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타 시·도의 동일종목이 설치된 학교로 진학한 자.

3. 전 소속단체장이 특별한 사유(보호자 생계유지를 위한 거주지 이동으로 전 가족이 전·출입이 확인될 경우 등에 준해 한정)를 인정하여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은 자이거나 당해 본 연맹 당해 해당 위원회에서 구제결정이 확정된 자

② 학교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 중 유급 또는 재수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가정빈곤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부상, 질병으로 유급한 학생 중 본 연맹이 정한 진단서를 첨부한 자로 입원으로 인해 수업일수가 부족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단, 당해 본 연맹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한하는 경우 제외)

③ 학생선수이외의 신분으로 선수등록을 마친 자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부상, 질병으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병·의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한 자로 입원 하거나 입원 이외의 일반 가료로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

2. 소속단체의 해체

3. 실업선수가 소속팀과 계약만료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사직이후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선수등록을 변경한 자(단, 본 연맹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 기간은 선수등록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4. 군 입대 및 제대 후 원소속의 복귀 시 기한 내에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자

제 23 조(선수 실적발급) 선수 실적발급은 인터넷 경기실적 발급지침에 따른다.

제4장 징 계 조 치

제 24 조(제한조치) ① 본 연맹에서 정한 동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선수: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활동(동호인 포함) 금지(보호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다)
2. 관련된 임·직원(단장, 감독, 코치 포함) : 최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당해 본 연맹 및 각 시·도연맹의 활동 자격정지
3. 학교 관련자(교장, 관련교사, 코치 등) : 소속기관장에게 의뢰하여 징계 의뢰(단, 감독, 코치는 제2호 조치 병행)

② 징계 만료이후 및 징계해제 후 재위반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③ 본 연맹은 전항에 의거, 규정 위배자에 대하여 징계종류, 징계대상자 및 징계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징계코자 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법제·상벌 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본 연맹에서 운영하는 선수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로 그 자격을 정지한다.

제 25 조(위반자 조치절차) ① 본 연맹은 위반자에 대해 징계종류, 징계 대상자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당해 본 연맹의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징계이외에 신분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대한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시킬 수 없다.

④ 징계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징계의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 5 장 외국인선수등록 자격 및 대회 참가

- 제 26 조 외국인 선수등록 자격 ① 실업팀 소속으로 선수등록은 소속회사에서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사원으로 등록된 자(계약서 및 소득증명서 첨부).
- ② 대학팀은 소속대학의 학적에 등록된 자.
- ③ 각소속의 외국인선수는 2명에 한해서 등록할 수 있다.
- ④ 국가대표 마라톤선수 합동훈련에 외국인선수로 등록된 선수는 본 연맹 요청 시 협조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외국인선수 대회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다음과 같이 참가할 수 있으나 시·도대항 및 전국육상경기 선수권대회는 참가할 수 없다.

① 트랙 / 필드경기대회

- 가. 등록된 소속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나. 각종육상경기대회 트랙경기 중 100m~400m까지의 결승경기에는 3명에 한하여 진출할 수 있으며, 필드경기 또한 3명까지 진출할 수 있다.

② 마라톤경기대회 등록된 소속으로 전반기 1회, 하반기 1회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그 외는 소속 국가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 28 조 외국인선수 대회참가에 따른 시상 외국인선수로 등록된 자는 제27조에 해당되는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을 하여도 국내소속으로 시상할 수 없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국내소속으로 시상이 가능하다.

제6장 실업선수의 계약

제 29 조 실업선수의 계약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5년, 대학교(전문대 포함)를 졸업한 자는 4년으로 하며 기간 내의 무단 이적을 금지한다.

-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는 타 단체로의 이적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내 타 단체로 이적 할 경우 계약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전 소속 단체장의 직인과 감독의 서명이 있는 이적동의서를 첨부하여 이적 하여야 한다. 또한 팀은 잔여계약금을 선수에게 청구 할 수 없다.

② 계약금에 대한 규정은 한국실업육상연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단, 해당 선수의 계약금에 따른 기록은 대한육상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 기록으로 하며, 계약금의 재조정은 2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상기계약에 대한 규정을 어길 경우 한국실업육상연맹 상벌규정에 따른다. (해당 단체 및 선수, 감독, 코치)

보 칙

제 1 조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 규정 개정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선수등록규정을 즉시 개정하여야 하며,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대한체육회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2 조 본 연맹 산하 경기단체는, 본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본 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조 본 연맹은 대한체육회에 대하여 선수등록마감일 30일 이내에 선수 등록상황을 정기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경기실적발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인터넷경기실적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발급한다.

부 칙(2015.1.13.)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06.)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